

# Q & A

## 건설폐기물 종류 어디에 해당되는지...

**Q** 건설공사 현장의 지하연속벽 굴착공사시 발생 하는 슬라임을 디칸다(DECANTER) 고속원심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헤파프레스(FILTER PRESS)로 압인 에어보로우공정을 거쳐 발생한 건설폐기물종류가 폐토사인지, 혼합건설폐기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폐토사와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건설폐기물인지... 만약, 폐토사라면 건설폐기물의 종류중 혼합건설폐기물로 보아서 중간처리업체에 처리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굴착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라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건설오니를 침전·탈수 처리하여 CAKE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하면 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련 정보(법령해석, 환경부의 주요정책 등)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사업장폐기물 전용 사이버상담실, (waste.me.go.kr)]를 구축하여 '05.10월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산처리 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여부

**Q** 구리로 된 제품에 염산을 부어서 산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때 구리된 제품의 중량은 300kg을 넘지 않으며 부피도 1m³ 미만입니다.

## |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비중 8.6임. 이런 제품을 공장의 한곳에 놓고 1주일에 한개 정도 염산을 부어서 제품의 내부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내에 다른 산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금속표면처리시설로서 용적 1m³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중전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시설의 용적 등 규모로 판단하며, 산처리시설의 최대 용적 1m³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산처리조에 투입되는 제품의 부피, 중량 등으로 용적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리제품을 산처리하는 공정에서 염산이 담기는 산처리조의 최대용적이 1m³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음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

**Q** 저희 공장에 탈사기 30마력이 있어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증설되어 압축기 10마력 1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소음배출시설 신고(허가) 사업장인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9조[별표5]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바, 배출시설 규모가 총 30마력인데 10마력을 추가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증설규모가 50%미만으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

**Q**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로 기 신고된 사업장으로 금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증설로 인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첨부서류가 신고필증 원본과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 및 환경부 고시 제 2005-4호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존 설치신고 받은 저장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50이상 증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변경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설치신고필증 원본, 변경사유, 기존 저장시설의 설치내역과 신규로 증설하고자 하는 저장시설의 설치내역(예 : 저장시설의 규격을 알 수 있는 크기,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 일반도면 등)을 포함하는 자료입니다.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Q** 신규사업을 위해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이에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자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장의 정상가동이 되지않아 발생폐수가 예상치의 10분의 1정도밖에 발생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도 향후 일주일에 1회 정도 가동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처리설비 비가동시에도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등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운영일지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방지시설을 일주일에 1회 정도 가동하여 폐수가 매일 방류되지 않더라도 배출시설에서 폐수는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 대기 자가측정 항목

**Q** 소형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소각로운영시 배출허용오염물질 항목으로 4개항목(먼지, SO<sub>2</sub>, HCl, CO)을 제시하였고, 소각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서에서는 배출항목으로는 5개항(먼지, CO, SO<sub>2</sub>, NO<sub>2</sub>, 매연)을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사후환경영향평가까지 종료가 된 상태에서 대기 자가측정항목을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측정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자가측정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항목에 대하여만 자가측정을 하면 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측정항목은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